

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법인 또는 기관명			
	대표자 성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전자우편주소		전화번호	
	주소			
	지정종류 <u>인쇄물 판매 (), 디지털 판매()</u>			

「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정보간행물 판매대행업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신청인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
국립해양조사원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사업계획서(판매방식, 항행통보 반영계획 및 이용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합니다) 2. 임원 명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해양조사기술자 명부 및 경력증명서 등 증명자료 4. 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(디지털 형태의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대행업자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법 제32조에 따른 결격사유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